

의안번호	2217833
의 퇴 인	김태선 의원
회 답 일	2026.4.29.
추 계 번호	26B17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4항) 1.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 2.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공과금임

□ 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변화는 부담금의 감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이하 “수입감소분”)과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소액(이하 “지출감소분”)으로 구성됨

－ (수입감소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 수입¹⁾에 계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분은 법정부담금의 감소분임

－ 즉, 수입감소분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감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소액임

－ (지출감소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 중 지출감소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감소분임

－ 지출감소분은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경우 해당 금액임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정부담금 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재정지출액의 감소분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 사용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출액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³⁾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음

－ 따라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변화 중 수입감소분은 추가재정소요의 산출 대상임

1) 사업코드: 59-593

2)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의 규모와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
 - 첫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이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장애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⁴⁾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부담금의 변화 규모에 대한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재정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감면 기준과 감면률 등에 따라 결정되나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Ⅲ. 부대의견

□ 없음

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데이터와 육아휴직 데이터 간 연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육아휴직자의 규모는 장애인 근로자의 명부와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 등)를 기반으로 한 수기 매칭을 통해서만 산출 가능하며, 해당 방식은 2025년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행된 바 있음 참고로, 해당 연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는 2024년 기준 239,173명이고, 육아휴직 사용자는 957명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